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12 선고 2021가단50073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
담당변호사 박환택, 김말금, 김준동, 홍성필, 최단비, 한혜윤, 이선영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해송

담당변호사 박헌홍

변론 종결2022. 8. 31.

판결 선고2022. 10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7. 7. 18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계약을 63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3,000,000원 및 이에
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

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, 갑 제1, 2호증의 각 1,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, 반대 증거가 없다.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등

○ 파산자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E,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(울산지방법원 2005가단5347 사건), 제1심법원은 2005. 9. 7. 'C은 E와 연대하여 63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에게 4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1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'는 내용의 이행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 판결은 2005. 10. 21. 확정되었다.

○ 원고는 예금보험공사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양수금채권'이라 한다).

나. F의 사망과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

○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가, 2017. 7. 18. 전에 사망하였다(이하 F을 '망인'이라 한다).

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아내인 G, 큰 아들인 피고, 둘째 아들인 H, 셋째 아들인 C이 있었는데,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2017. 7. 18.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'이라 한다).

○ 피고는 2017. 8. 19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

그리고 피고는 2019. 10. 17.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,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, 주식회사 I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

2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약

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

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 2/9를 피고에게 처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 상속지분 처분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그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C과 피고는 악의(惡意)이다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 상속지분 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쟁점 및 판단 - 사해행위 성립 여부

가. 참고 법리

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(민법 제1008조)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)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;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).

나. 구체적인 판단

앞서 본 기초사실, 을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, 그리고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른 재산분할결과는 C에 대하여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 상속지분 처분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○ 망인은 생전인 2007. 4. 30. 망인 소유의 울산 남구 J에 있는 K아파트 L호를 M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뒤 2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C에게 사업자금으로 주었다.

또한, 망인은 2014. 11. 20. 위 K아파트를 N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 중 2,000만 원도 C에게 주었다.

○ 피고는 아버지인 망인과 피고의 어머니인 G의 병원비, 보험료,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였고, G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렸으며, 망인 사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서 G를 부양하고 있다. 반면에, C이 망인과 G를 물질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.

○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C뿐만 아니라 망인의 또 다른 법정상속인인 G와 H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로 분할협의를 하였는데, 이는 망인과 G의 큰 아들인 피고가 피고의 신분, 과거 및 장래의 부모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, 부모님이 함께 사시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물려받되 그곳에서 홀로된 노모를 모시고 부양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.

○ 이같이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 등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,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가족법적 성격,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과 피고의 부양관계 등을 두루 고려할 때에,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다.

4. 결론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, 이 법원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, 피고의 선의 여부 등에 관한 쟁점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현중

별지